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0가단23466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나68382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0가단234662 판결

전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김말금, 이선영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움

담당변호사 양경식

변론 종결2021. 9. 3.

판결 선고2021. 10. 1.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7. 3. 3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92,513,14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2,513,144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부담하고, 2/3는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7. 3. 31.1)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C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7. 4. 3. 접수 제761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9.자 2018차전29254 지급명령에 기한
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2) 나.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5. 12.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으로 처인 E, 아들인 C, 딸인 피고가 있다.
다. 망인의 상속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서울 강서구 F (이하 '제1 부동산')	1,607,688,080토지: 1,190,573,060건물: 417,115,020	2021. 5. 10.자 및 2021. 8. 23.자 감정평가서
상속 재산	평택시 G 외 10필지 (이하 '제2 부동산')	262,663,292
	안동시 H 외 3필지(이하 '제3 부동산')	58,444,634
상속재산 합계	1,928,796,006	

라.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E, C, 피고는 2017. 3. 31.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25. 채권최고액 816,000,000원, 채무자 D(망인), 근저당권자 K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17. 4. 3.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채무자가 망인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

바. C이 무자력 상태라는데 다툼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2,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L의 각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상속재산의 가액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1,966,238,080원이고,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그의 법정상속분 2/7 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 2/7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C은 망인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생전 증여를 받아 특별수익이 있었다.

1	M 채무인수	198,390,289
2	대여금(2012. 12. 11.)	100,000,000
3	N 물상담보	300,000,000
4	O 대여금(2016. 4. 14.)	75,000,000
합계	673,390,289	

그리고 E은 C 소유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함으로써 의제배당소득세 430,619,424원 및 그에 대한 가산금 상당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C와 E은 상속포기신청을 하고 피고만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기로 하였으나, 법무사의 과실로 신청기간이 도과하여 2016. 11. 22.경 상속포기신청이 각하되었고, 불가피하게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후 피고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쳤고, E은 이 사건 제2, 3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후 타에 매각하였다.

따라서 C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따라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더라도 C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³⁾ 한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참조).

나. 먼저 C의 특별수익 인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피고는, C이 소외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의 전무로서 M에게 2007. 2. 9.경부터 2010. 4. 23.까지 4억 2,8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회사를 경영에 참여하던 중(을2-10, 2011. 6. 30.자 확약서), M의 사업자금이 부족해지자 2010. 4. 2.경 망인의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기존 담보채무 430,000,000원이 있었음) M의 사업자금 370,000,000원을 조달하여 사용하였는데, P은행은 2011. 12. 11.경 M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임의경매를 진행하였고,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가 2012. 4. 10. M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함으로써, C은 M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망인은 2012. 4. 18. 위 임의경매를 중지시키기 위해 그동안의 M 연체이자 48,380,289원을 P은행에 상환하고, 580,000,000원의 잔여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을2-11, P은행 상환영수증), 이로써 C은 위 시기에 사업자금에 해당하는 198,380,289원(=580,000,000원 + 48,380,289원 - 430,000,000원)을 특별수익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M에 근무하던 중 망인 소유의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19. 채권최고액 960,000,000원, 채무자 M,

근저당권자 P은행의 근저당권을 설정된 사실, P은행의 신청으로 2011. 12. 21.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된 사실, 2012. 4. 18.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채권최고액을 696,000,000원, 채무자 D(망인), 채권자 P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같은 날 M의 연체이자 등 48,380,289원이 상환되고, 망인 명의로 580,000,000원의 대출이 발생하여 M의 동액 상당 대출원금이 상환된 사실, 2012. 4. 19. 위 임의경매신청이 취하된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 2010. 4. 19.자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M인 이상 C이 망인으로부터 그 피담보대출금 상당의 증여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은 위 임의경매절차를 중지시키기 위해 M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한 것이므로, C이 망인으로부터 피고가 주장하는 위 198,380,289원 상당의 증여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는, 망인이 2012. 12. 11.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담보로 P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아 C에게 사업자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증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 소유의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11.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D(망인), 근저당권자 P은행의 근저당권을 설정된 사실, 망인이 2012. 12. 13. Q 명의의 계좌에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으나, C과 Q의 관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증거 및 인정사실만으로 C이 망인으로부터 위 1억 원 상당의 증여를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는, C이 2014년경부터 소외 O 주식회사(이하 'O'라 한다)의 부사장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하면서 2016. 2. 18. 망인에게 채권자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를 위하여 망인의 승낙을 받고 망인 소유의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사실상 C이 위 3억 원을 특별수익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 소유의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18.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O, 근저당권자 N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N의 신청으로 2020. 2. 14.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된 사실은 알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O인 이상 C이 망인으로부터 그 채권최고액 상당의 증여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N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에 관한 주장, 입증도 없다).

4) 피고는, 망인이 의식불명일 당시 C이 망인의 K은행 통장에서 직접 75,000,000원을 출금하여 이를 O의 운영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금원은 C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4호증의 4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 명의의 K은행통장에서 2016. 4. 14. 7,500만 원이 출금된 사실, 2016. 4. 15. O 명의 통장에 7,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 같은 날 채권자 C, 채무자 O, 차용금 7,000만 원으로 하는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망인으로부터 위 7,000만 원 상당의 증여를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5) 소결론

C은 2016. 4. 14.경 망인으로부터 7,000만 원의 생전 증여를 받아 특별수익이 있으므로, 그 수증액이 자신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다.

다. E의 조세채무 부담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E이 C 소유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함에 따라 의제배당소득세 630,649,424원을 부담하게 되었는데 이후 소외 R가 위의제배당소득세 중 2억 원만 납부하고 현재까지 430,619,424원 및 그에 대한 가산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E이 C을 대신하여 의제배당소득세 430,619,424원 및 그에 대한 가산금 상당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된 만큼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계약에 반영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이 C 소유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게 됨에 따라 의제배당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C이 망인으로부터 특별수익한 재산의 범주에 포함시키거나 C이 법정상속분을 포기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판단에 의하면, 망인의 순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인 2016. 5. 12.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인 1,928,796,006원에서 피담보채무액인 1,080,000,000원(다툼 없음)을 공제한 나머지 848,796,006원이고, 여기에다가 C의 특별수익 70,000,000원을 가산한 후 각자의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에서 특별수익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구체적

상속분은 E은 393,769,716원[= (848,796,006원+70,000,000원) × 3/7, 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C은 192,513,144원[= (848,796,006원+70,000,000원) × 2/7 - 70,000,000원], 피고는 262,513,144원[= (848,796,006원+70,000,000원) × 2/7]이 되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따라 실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액수(재산분할결과)는 E이 321,107,926원(= 제2 부동산 시가 262,663,292원 + 제3 부동산 시가 58,444,634원), C이 0원4), 피고가 527,588,080원(= 848,796,006원 - 321,107,926원)이 되고, 한편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2/7 지분에 해당하는 액수는 459,339,451원(= 1,607,688,080원 × 2/7) 상당이다.

제1부동산	1,607,688,080	1,080,000,000	527,688,080	E		3/7	393,769,716.86	321,107,926
제2부동산	262,663,292	262,663,292	C	70,000,000	2/7	192,513,144.57		
제3부동산	58,444,634	58,444,634	피고		2/7	262,513,144.57	527,688,080	
합계	1,928,796,006	918,796,006		70,000,000		848,796,006	848,796,006	

2) 따라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채무자인 C의 구체적 상속분, C과 피고의 관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내용, 실제 재산분할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C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192,513,144원 상당의 구체적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피고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게 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행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재산분할결과가 C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192,513,14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마. 원상회복의 방법

1) 사해행위인 계약 전부의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일부취소를 하여야 할 경우 그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바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결과가 되어 공평에 반하므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192,513,14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92,513,14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192,513,14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정도성

별지

- 1) 2021. 3. 1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2016. 5. 12.'는 오기가 명백하다.
- 2) 위 지급명령의 주문은 '1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36,804,794원 및 그 중 195,000,000원에 대하여 2007.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C과 J은 I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각 2,6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돈을 각 지급하라.'는 것이다. 위 지급명령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58836호 양수금 사건으로 확정된 판결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제기된 소송이다.
- 3) 반면에,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 4) 피고가 피담보채무를 모두 채무인수 한 것으로 본다.